
사 규 집

2026. 3.

주식회사 엘에이치이앤에스

8. 복지후생규정

복지후생규정

제정 2018.10.30. 규정 제08호
개정 2018.12.27. 규정 제13호
개정 2020.07.30. 규정 제19호
개정 2023.08.28. 규정 제40호
개정 2024.04.02. 규정 제46호
개정 2024.11.19. 규정 제50호
개정 2026.03.30. 규정 제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엘에이치이앤에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과 직원의 보건관리, 생활안정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원과 「직제규정」에 따른 직원(이하 “임직원”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보건)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임직원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혜자로 하는 임직원의 건강과 보건에 관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복리후생

제6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기념금품
2. 복리후생비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운영
3. 그 밖의 복리후생비 (식비, 명절상여금 등)

② 제1항의 제2호 선택적근로자복리후생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전년도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하며, 전년도 재직 월수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단시간근로자는 제1항의 복리후생비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결정하며, 천원미만은 천원으로 본다.

$$\text{일반근로자의 복리후생비 지급 한도} \times \frac{\text{단시간근로자의 주당근무시간}}{40\text{시간}}$$

제6조의2(식비 지급) ① 삭제 <2024.11.19.>

② 삭제 <2024.11.19.>

제4장 피복

제7조(피복 대여) 임직원에게 업무수행 중 착용할 피복을 대여할 수 있으며, 피복 대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체육

제8조(직장체육진흥) ①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법령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 ② 임직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구의 설치 및 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임차사택 [본장 전부 제정 2023.08.28.]

제9조(임차사택) 회사는 직원이 「취업규칙」 제42조 및 「인사규정」 제15조에 해당하는 회사의 필요에 의한 인사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는 사유 발생 시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사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임차사택의 운영관리) ① 임차사택의 운영관리 책임은 총무담당부서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② 관리부서장은 임차사택의 입주대상자 심의 및 부동산 계약 전반의 관리를 책임지며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임차사택 입주대상자) ① 규정 제 9조에 해당하는 직원은 임차사택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사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한다.

1. 본인 희망에 의한 전보
 2. 직원의 실제 거주지와 변경 근무지간 거리가 인접한 경우
 3. 직원 또는 배우자 등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가족의 실제 주거지 및 소유 주택과 변경 근무지간의 거리가 인접한 경우
 4. 전보발령일 기준으로 임차사택 입주 기간이 경과한 직원
-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사원증 [본장 전부 제정 2024. 11. 19.]

제12조(사원증의 발급) 회사는 임직원의 신분을 표시하고 업무 공간 등 출입하기 위한 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사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8.10.30.)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7.)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30.)

이 규정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28.)

이 규정은 2023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02.)

이 규정은 202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1항 개정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4.11.19.)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30.)

이 규정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